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2. 10. 9. (제197회)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제 출 자	배영백 의원 외 6명
제출 연월일	2012. 9. .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배영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9. .

발 의 자 : 배영백, 김희수, 박정현, 김재구,
이영희, 성목용, 이달호

1. 제정이유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령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안 제3조 ~ 안 제4조)
- 장수축하금의 지급원칙 및 신청방법(안 제5조 ~ 안 제6조)
- 장수축하금의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안 제8조 ~ 안 제9조)

3. 제 정 안 : 불 임

4. 참고자료

- 상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령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9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고령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원칙) ① 장수축하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만 99세가 되는 날로 한다.

- 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신청은 지급기준일이 2개월 남은 때부터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장수축하금은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자(위임장 소지자

: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급) 군수는 제6조 제2항에 의거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 또는 관외로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의 지급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 첫해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만 99세 이상은 만 99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한다.

2012. 9. .

수 신 : 고령군의회의장

제 목 :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1부

발 의 자 의 원 배 영 백 (인) (대표발의)

의 장 김 희 수 (인)

부의장 박 정 현 (인)

의 원 김 재 구 (인)

의 원 이 영 희 (인)

의 원 성 목 용 (인)

의 원 이 달 호 (인)

[별지 제2호 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위임장(제6조 관련)

위 임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받은자	위임사유			

본인은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고령군수 귀하

